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수 산 자 원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수산자원관리법」이 개정(2019.12.2.) 및 시행(2020.6.4.)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포획·채취의 금지 해제 허가 이후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(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7)

나.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·채취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·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·수심·체장·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·채취금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1.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
2.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,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

제53조제1항 중 “법 제70조제1항”을 “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법 제70조제1항”을 “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3조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이상위반
1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·	법 제70조제1 항제1호	100	100

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			
2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70조제1항제2호	200	200
3.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·방류한 경우	법 제70조제1항제3호	100	100
3의2.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	법 제70조제1항제4호	100	100
4.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70조제1항제5호	200	200
1. 법 제26조2를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호	50	1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경우에 한하여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·수심·채장·채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 ·채취금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</u> <u>1.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</u> <u>2.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 또 는 어업자단체 간 어업자협약 을 체결하고,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 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</u>
제53조(과태료의 부과) ① <u>법 제7 0조제1항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. ② 해양수산부장관, 수산에 관	제53조(과태료의 부과) ① <u>법 제7 0조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. ② -----

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<u>법 제70조 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40